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 행정규칙명 :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 제 · 개정 이유

일제강점기에 마련된 지적관련 전문용어 등에 대한 일본식 한자 표현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순화하기 위해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하여 지적측량 서비스 현장 및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에 활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용어를 고시하기 위함

나.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안 제2조)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결과에 관한 내용

다. 전문용어의 활용 등(안 제3조)

고시된 지적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용어의 활용

라. 재검토기한(안 제4조)

재검토기한 설정

마.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어(안 별표)

일본식 한자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31개 표준어 선정